

(우)04427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46길 37(이촌동) [http://www.kma.org] / 전화(02)6350-6571/ 전송(02)790-8911 **보험국** 보험국장 김기성[6574] 보험정책팀장 백영기[6581] 팀원 김용덕[6571]/E-mail :kma6350@naver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841-13354호

시행일자 2024. 1. 16.

수 신 수신처 참조

참 조

제 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 개정 안내

- 1.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- 2. 관련근거 :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법률 제19981호(2024. 1. 9.)
- 3. 상기와 관련, 국토교통부에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 개정을 개정한 바, 붙임자료와 같이 전달해 드리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.

- 다음 -

○ 주요내용:

- 전문심사기관의 심사결과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지급된 이후에도 거짓이나 부당 및 착오 등으로 진료비가 잘못 지급된 사실을 발견하는 경우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화수 가능함
- 환수 가능 기한은 의료기관이 보험회사 등에 해당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한 날부터 5년 이내로 함
- 시행일 : <u>2024. 7. 10.</u>

#붙임자료

- 1) 의안원문 1부.
- 2) 신구조문대비표 1부. 끝.

* 수신처: 각 시도의사회장, 대한의학회장(26개 전문학회장), 대한개원의협의회장, 각과개원의협의회장, 대한병원장협의회장, 한국여자의사회장